

# 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(항공분야) 채용 실기시험 시행 공고

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(항공분야) 채용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5. 18.

## 강 원 도 지 사

### I 시험일정

| 시험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 험 일 정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| 구 분     |           | 일정공고                  | 시 험 일                 | 합격자 발표    |
| 2020년<br>강원도<br>소방공무원<br>(항공분야)<br>채용시험 | 원서접수    |           | 기 실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| 제1차 시험  | 실기시험      | 5. 18.(월)             | 6. 16.(화) ~ 6. 17.(수) | 6. 23.(화) |
|   | 제2차 시험  | 신체검사      | 6. 23.(화)             | 6. 24.(수) ~ 6. 25.(목) | 7. 15.(수) |
|   | 제3차 시험  | 인·적성검사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7. 1.(수)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|         | 서류전형      | 7. 3.(금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제4차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접시험    | 7. 15.(수) | 7. 23.(목) ~ 7. 24.(금) | 7. 31.(금)             |           |

-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, 기상조건,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
- 당해 시험일정, 변경사항 및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‘인사채용’ 별도 공고(공지)
- 자격(면허)관련 증명서는 서류전형 시 제출 후 ‘별도의 서류심사’ 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

### II 시험일시

| 채용분야       | 시 험 일 |                | 집결시간  | 수험번호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항공<br>운항관제 | 실기시험  | '20. 6. 17.(수) | 08:30 | 3011, 3029, 3043 |
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12:30 | 3052             |

※ 수험생은 해당 수험번호 필히 확인

- 일자별 편성된 수험번호대로 지정시간 집결, 시험일정 임의 변경불가
- 시험당일 준비물(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, 운항관리 또는 항공교통 관제사 증명서) 필히 지참

### Ⅲ 시험장소

| 채용분야       | 시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장소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항공<br>운항관제 |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<br>(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) | 4층 VIP라운지 |

### Ⅳ 주요 평가내용

| 채용분야       | 평가내용(구술시험)   |
|------------|--|
| 항공<br>운항관제 | 1. 기술분야 평가요소<br>-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운항계획, 비행정보간행물, 항공고시보 해독, 항공기 구조 및 시스템, 항행안전무선시설,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<br>2. 기본역량 평가요소<br>- 계기 출항, 접근 절차 및 항공교통 관제 절차, 운항 통제 등 운항관리 일반<br>3. 임무역량 평가항목<br>- 영어능력평가(표준항공관제절차, ANNEX 등 독해), 회전익 운항기술기준,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절차 |

### Ⅴ 응시자 유의사항

-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 (단, 시험전일까지 시험실에 입실불가)
- 본 시험의 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, 변경 시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공고
  - ※ 미열람·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
- 천재지변(폭우, 강풍 등) 시 예정대로 시행, 부득이한 경우 별도공고 응시원서(사진포함) 및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, 허위사진등록, 오기,

누락, 연락불능, 중복지원, 자격입증서류 미비,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

- 신분증은 주민등록증·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·운전면허증·기간만료 전 여권에 한해 인정하며, 학생증·자격수첩·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·공무원증 등은 불인정

※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

- 시험장 물품 파손·훼손 등의 경우 수험생 본인 변상
-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관리, 분실 시 수험생 귀책
- 시험관련 조희기관에 응시원서·제출서류 및 자격(면허) 등 관련하여 사실 여부 조회예정, 원서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- 수험표는 5.26.(화)부터 출력이 가능하며, 분실 시 ‘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’ 에서 재 출력 가능
-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단계별 시험공고문 확인
-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디지털카메라, MP3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안경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이어폰, PDA, 스마트워치 등) 휴대불가하며, 시험시작 후 발견된 경우 실제 사용여부 관계 없이 부정처리
-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 공고문(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(항공 분야)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, ‘20. 2. 10.)에 의거하며,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응시
- 응시자는 집결시간 전(前) 도착하여 필히 등록부 서명, 미등록 시 시험응시 불가
- 실기시험 관련 문의 : 소방청 항공통신과(044-205-7703)
- 합격자발표 등 향후 일정문의 :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(033-249-5104)

- 붙임 1. 부정행위 등 금지 1부  
2. 실기평가 표준서 1부  
3. 『코로나19 감염증』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 1부. 끝.

## 부정행위 등 금지

### ○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1호 ~ 7호 위반행위

#### 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6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### ○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2항 제1호 ~ 4호 위반행위

#### 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 유의사항 중 정지 또는 무효,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

○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○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[붙임 2]

---

- 소방항공 운항·관제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-

# 실 기 평 가 표 준 서

---



소 방 청  
항 공 통 신 과

# || 목 차 ||

## 제1장 총칙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1 목적 .....          | 1 |
| 1.2 구성 .....          | 1 |
| 1.3 용어의 정의 .....      | 1 |
| 1.4 표준서의 사용 .....     | 2 |
| 1.5 실기시험 방법 .....     | 2 |
| 1.6 실기시험위원 의무사항 ..... | 3 |
| 1.7 응시자 의무사항 .....    | 3 |
| 1.8 실기시험의 득점수준 .....  | 4 |
| 1.9 참고자료 .....        | 4 |

## 제2장 실기영역

|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2.1 기술분야 평가항목 ..... | 5 |
| 2.2 기본역량 평가항목 ..... | 5 |
| 2.3 임무역량 평가항목 ..... | 6 |

## 제3장 평가기준

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3.1 기술분야 ..... | 6 |
| 3.2 기본역량 ..... | 8 |
| 3.3 임무역량 ..... | 9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참고.1 소방항공 운항·관제분야 실기시험 채점표 ..... | 10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참고.2 소방항공 운항·관제분야 채용 실기시험 평가표 ... | 11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
# 제1장 총 칙

## 1.1 목 적

소방항공 운항·관제분야 경력경쟁채용 실기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표준서에 따라 응시자의 기량을 공정하게 평가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 1.2 구 성

실기시험 표준서는 기술분야, 기본역량, 임무역량을 실기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실기해당 영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.

또한 실기영역별로 각 과목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세부과목과 평가항목을 기술하여 표준화된 실기시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.

## 1.3 용어의 정의

1. 실기시험이라 함은 소방항공 운항·관제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실시하는 시험으로 구술시험을 말한다.
2. 실기영역은 항공기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관련지식과 업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등 실기평가요소 범위를 말한다.
3. 평가요소는 실기영역 내의 운항관리 관련 업무로 평가항목으로 분류한다.
4. 평가항목은 응시자가 실기시험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  - ① 실기시험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
  - ② 기본적인 운항관리지식 및 적용절차
  - ③ 자격 관련하여 수행능력이 요구되는 항목

5. 실시방법은 구술시험으로 진행하며 작업 목적, 절차, 주의사항 등 작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문답 형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6. 시험위원이라 함은 본 표준서를 지침으로 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관으로서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.

## 1.4 표준서의 사용

소방항공 운항·관제분야 경력경쟁채용 시험 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자격과 역량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실기영역 세부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.

그러나 실기시험위원은 효율적인 시험진행을 위하여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## 1.5 실기시험 방법

실기시험위원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운항관리 담당으로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시험과 병행하여 실제작업을 평가할 수 있다.

## 1.6 실기시험위원 의무사항

1. 응시자의 항공관련 업무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시된 각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2. 법규와 안전에 관한 절차 및 규제사항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절차를 따르는지 평가하여야 한다.
3. 구술시험 평가가 곤란한 사항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.
4. 시험위원이 평가 전 응시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평가 진행사항에 대한 브리핑 및 타 응시자의 평가과정 관람 금지

② 평가진행사항에 대한 녹화 또는 녹취 및 불필요한 전자장비 휴대금지

5. 시험위원은 평가 전 응시자에게 평가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취를 금지하도록 고지하고 불필요한 전자장비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다.
6. 시험위원은 응시자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어떠한 암시 또는 정보 제공을 금지 한다.

## 1.7 응시자 의무사항

채용 실기시험 응시자는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위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.

1. 항공종사자 자격(항공교통관제사, 운항관리사)증명을 소지한다.
2. 응시자는 지정된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.
3. 불필요한 전자장비 휴대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.
4. 시험을 종료한 응시자와 어떤 정보도 교환해서는 안 된다.

## 1.8 실기시험의 득점기준

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 득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, 응시자는 실제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적인 장애나 심리적인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.

1. 본 표준서에서 제시한 실기영역을 수행할 기술적인 지식(knowledge)
2. 본 표준서의 평가항목을 수행할 작업 능력(skill)

| 구 분     | 평가요소별 득점 기준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점 ~9점 |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"매우우수"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|
| 8점 ~7점  |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"우수"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 |
| 6점 ~5점  |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"보통"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  |
| 4점 ~1점  |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"미흡"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 |

## 1.9 참고자료

1. 국내 항공관련법령
2. 항공정보간행물(AIP), 항공고시보 및 회람
3. 비행교범(Flight Manual)
4. 항공지식 교범(AC61-23)
5. 항공기 사고조사 관련규정
6. 항로지도 등
7. Aviation Weather(AC00-45)
8. Aviation Weather Service(AC00-45)
9. Airman's information manual(AIM)
10. 국토교통부 발간 항공종사자 표준교재
11. 회전익항공기 운항기술기준
12. 항공기사고 수색구조(ICAO ANNEX12)

## **제2장 실기영역**

### **2.1 기술분야 평가요소**

1.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운항계획
2. 비행정정보간행물, 항공고시보 해독
3. 항행안전무선시설,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

### **2.2 기본역량 평가요소**

1. 계기 출항, 접근 절차 및 항공교통 관제 절차
2. 항로비행, 공중항법 등 비행 중 절차
3. 운항 통제 등 운항관리 일반

### **2.3 임무역량 평가항목**

1. 영어능력평가(표준항공관제절차, ANNEX 등 독해)
2. 회전익 운항기술기준(산악,해안 인명구조, 건물화재 시 인명구조, 주간 산불진화, 야간산불진화기준 및 응급의료전용(이송) 회전익 항공기)
3.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절차

# 제3장 평가기준

## 3.1 기술분야

| 과 목     | 세 부 과 목       | 평 가 항 목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운항계획    |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  | a. Weather reports and forecasts<br>b. Pilot and radar reports<br>c. 항공기상관측과 전문(METAR / SPECI / TAF)<br>d. SIGMETs and AIRMETs<br>e. ATIS reports<br>f. NOTAMs / NOTAM system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비행계획 작성       | 일반비행계획서 작성   |
| 항공정보    | 항공정보          | a. AIP(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)<br>· Part 1 : General<br>· Part 2 : EnRoute<br>· Part 3 : Aerodromes<br>b. NOTAM(Class I, Class II)   |
| 입출항 절차  | 공항 및 항로사용 절차  | - 계기 출항 및 접근 절차도해독<br>a. 표고<br>b. 접지대표고(TDZE)<br>c. Aircraft approach category<br>d. 결심고도(DH) / 최저 강하고도(MDA)<br>e. 계기접근/착륙 최저치<br>(straight-in, circling, side-step, and radar)<br>f. 이륙 service<br>h. 선회절차 제한사항 |
|         | 항공교통 관제절차     | a. 항공교통업무(Air Traffic Service)의 개념<br>b. 항공교통관제(Air Traffic Control)의 개념<br>c. 비행장관제<br>d. 접근관제<br>e. 지역관제<br>f. 공역의 개념<br>g. 공역의 종류<br>h. 사용목적에 따른 공역<br>i.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다른 공역<br>j. 비행금지구역 비행절차                |
| 비행 중 절차 | 운항 중 통신수단과 방법 | a. VHF<br>b. HF  |
|         | 비행감시          | 비행 감시  |

### 3.2 기본역량

| 과 목      | 세 부 과 목          | 평 가 항 목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운항관리     | 인적요소             | CRM(Crew Resource Management)  |
|          | 법정요구사항           | a. 운항관리 담당자의 의무<br>b. 필요한 장비<br>c. 운항관리구역, 항로 및 주 비행장 등<br>d. 인가된 계기접근절차<br>e. 이·착륙 최저치  |
|          | 운항 통제 및 조치사항     | 운항 통제 및 조치사항   |
| 항행안전시설   | 항행안전 무선시설        | a. 전방향 표지시설(VOR)<br>b. 거리측정 시설(DME)<br>c. 계기착륙시설(ILS)<br>d. 무지향표지시설(NDB)<br>e. 레이더시설(ASR/ARSR/SSR/ARTS/ASDE/PAR)   |
|          | 항공등화             | a. 비행장등대(Aerodrome Beacon)<br>b. 진입등시스템(Approach Lighting Systems)<br>c. 진입각지시등(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)<br>d. 활주로등(Runway Edge Lights)<br>e. 활주로시단등(Runway Threshold Lights)<br>f. 선회등(Circling Guidance Lights)<br>g. 유도로등(Taxiway Edge Light) |
| 비정상 운항절차 | 비정상 상황 발생 및 조치사항 | a. 비상사태 선언의 의무<br>b. 비상사태시 요구되는 보고<br>c. 미도착 또는 통신두절 항공기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보<br>d. 정부의 의무와 업무<br>e. 비상사태 선언의 의미<br>f. 사고 보고에 필요한 사항   |
|          | 기타 절차 및 업무       | 기타 절차 및 업무   |

### 3.3 임무역량

| 과 목 | 세 부 과 목    | 평 가 항 목   |
|-----|------------|---|
|     | 항공영어       | 표준항공관제절차, ANNEX 등 지문에 대한 해독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회전익 운항기술기준 | 야간 산불 진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| 응급의료전용 회전익항공기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| 비상단계 별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항공안전관리     |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이해, SMS(Safety Management System)의 이해 |
|     | 항공안전법      | 항공기 운항, 항공기 교통업무의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부 칙

이 표준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방항공 항공운항·관제 분야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적용한다.

# 참고

## 소방항공 운항 · 관제분야 채용 실기시험 평가표

| 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|
| 수험<br>번호 |  | 응시<br>분야 | 운항관리 | 응시<br>직급 |  |
|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기<br>적<br>감재<br>정<br>용란 | (예시문) 본인은 실기시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필적 :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| 평 가 항 목            | 배점 | 위 원 평 정 |  |  | 평 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|--|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기 술<br>분 야 | 1. 운항계획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           | 2. 항공정보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           | 3. 입출항 절차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           | 4. 비행 중 절차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평 가 소 계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점   |
| 기 본<br>역 량 | 1. 운항관리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           | 2. 항행안전시설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           | 3. 비정상 운항절차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평 가 소 계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점   |
| 임 무<br>역 량 | 1. 회전익 운항기술기준  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           | 2. 항공영어 / 항공사고수색구조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           | 3. 항공안전관리/안전관리법    |    |         |  |  |     |
| 평 가 소 계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|  | 점   |

| 총 점     | 평가결과(합계) | 점  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평가위원 서명 | 성명       | (서명) |
|         | 성명       | (서명) |
|         | 성명       | (서명) |

## 『코로나19 감염증』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

『코로나19 감염증』에 대한 확산 예방과 안정적인 채용시험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, 채용시험 중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당일 시험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√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**시험장 입장부터 시험장 퇴장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**해야 합니다.
  - \*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
  - \*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**마스크 여분 소지**하여 주시기 바람
- √ **시험시간 중**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**시험감독관의 요청 시 일시제거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√ 시험 전·후, 시험장 안·밖에서 **다른 수험생과 1.5m이상 거리를 확보**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√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(37.5도 ↑)체크, 필요시 문진표 작성 등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√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- √ **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** 등은 **필히 소지**하고, 시험장 내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√ 시험 중 발열,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시험본부 및 시험감독관에게 필히 알려주시기 바라며, **필요시 별도 시험실에 격리되어 응시**할 수 있습니다.
- √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**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**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인근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√ 시험시행본부에서는 수험생이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인후통 등) **고위험군** 의심이라고 판단될 시 **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험응시가 불가**하오며,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(벌칙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4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
5.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

